



 금융위원회	보도자료			 금융감독원
	보도	2017.9.11(월) 조간	배포	
책임자	금융위 금감원	금융소비자과 서민금융감독국	박주영 과장 하주식 과장 김동성 국장	담당자 성보경 사무관 (02-2100-2632) 홍상준 사무관 (02-2100-2612) 김병철 팀장 (02-3145-8001)

**제 목 : '빚 권하는 관행' 개선을 위해
대출모집인 및 대부업 광고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.**

① 대출모집인 규제 강화

- ▶ 대출모집인 영업행위 규제 및 금융회사 관리 책임 강화
(「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」 개정)
- ▶ 대출모집인 실태 집중 점검 및 제재 등의 법적근거 마련

② 대부업 광고규제 강화

- ▶ 불건전 문구 금지 등 광고 내용 규제 강화
- ▶ 총량관리제 도입, 방송광고 금지 등 근본적인 광고규제 강화 방안 강구

I. 검토배경

- 금융회사의 대출상품 판매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, 소비자에게 '손쉬운 대출'과 '과잉대출'을 유도하는 관행 증가
 - 대출모집인은 소비자에게 대출을 권유(push-마케팅)하는 방식으로 금융회사의 영업망을 보완하여 편리하고 과도한 대출을 유도
 - 대부업광고는 '쉽고 빠르다'는 이미지를 주입하여, 상환부담에 대한 고려없이 고금리 대출에 접근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
- 이에 따라, 손쉽게 과도한 빚을 권하는 대출관행 개선을 위하여, 대출모집인 및 대부업 광고 규제를 강화할 필요

II. 대출모집인 규제 강화

1 현황 및 문제점

- ① **(영업현황)** 110여개 금융회사에서 약 12천여명이 활동 중('16년말)이며,
 - 대출모집인에 의한 대출규모는 모집인을 활용하는 금융회사 신규 가계대출의 25~30% 수준
 - * 은행권은 담보대출, 저축은행·할부금융은 신용대출 대출모집인 모집비중이 높음
 - 금융회사가 대출모집인에게 지급한 수수료는 총 5,410억원('16년)
 - 수수료율은 신용대출(1~5%)이 담보대출(0.2~2.4%)의 2배 이상이며, 은행(평균 0.3%)에 비해 저축은행·할부금융(2~5%)이 높은 수준
- ② **(관리실태)** 대출모집인의 변동성이 크고*, 금융회사의 관리는 민원예방 등 형식적인 수준**으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함
 - * '16년 중 주요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 계약해지는 6,853건, 신규 등록은 7,359건으로 등록/이탈이 매우 빈번하여 이중 등록 및 차명등록 등 관리 곤란
 - ** 금융회사들은 대출모집인의 모범규준 준수 및 금지행위 발생 여부 등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를 하지 못하고 민원예방 등에 치중하는 수준
- ③ **(규제현황)** 대출모집업무를 위탁한 금융회사를 통해 간접 규제* (「대출모집인제도 모범규준」(행정지도) 적용)
 - * 보험설계사·카드모집인·투자권유대행인은 각 법률에 따라 등록하고, 의무 위반시 행정제재 및 벌칙대상이 되지만, 대출모집인은 직접적인 제재·감독이 어려움
 - (등록요건) 의무교육(12시간) 이수, 1사전속 의무 등
 - (행위규제) 사전고지(업무위탁 사실, 고객으로부터 수수료 수취 불가, 직접 대출실행 결정 금지)의무, 과도한 권유 및 과대광고 금지 등*
 - * 과도한 경품제공, 고객DB 접근 및 신용정보조회, 고객정보 부정사용, 다단계 등
 - (금융회사 책임) 대출모집인에 대한 교육·관리 의무가 있으며, 소비자 피해발생시 금융회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

2 규제 강화 방안

(1) 대출모집인 제도 모범규준 개정 사항

① [등록규제] 대출모집인 등록요건 및 1사전속 의무 강화

- (등록요건) 대출모집인 교육시간을 2배 확대*(12시간→24시간)하고, 평가시험 및 모집법인 인력·자본금 요건 등**(법 제정까지 권장사항) 신설

* 법규 준수·금융사고 예방·신용관리의 중요성 등 소비자보호관련 교육 강화

** (예) 대출상당사 5명 이상, 자본금(또는 보증금예탁 등) 1억원 이상

- (1사전속 강화) 대출모집법인의 주주·경영진 등은 다른 대출모집법을 설립하거나 임원등이 될 수 없도록 규정

* (예) A 캐피탈 수탁법인(甲)과 B 저축은행 수탁법인(乙)을 동일인이 운영하여, 대출상당사 일괄 채용 및 2개 금융회사 대출모집을 시행하는 등 우회 영업 방지

② [영업행위규제] 광고·불건전행위 규제 및 설명의무 확대

- (광고규제) 명함·상품안내장·인터넷 등 광고시, 대출모집인 성명·상호등을 크게 표시*하여 금융회사 직원등으로 오인을 방지

* 자기 성명 및 상호는 크게, 전속 금융회사 명칭은 상단 또는 하단에 작게 표기

- (고금리대출 갈아타기 권유 금지) 대출모집인의 불건전 영업행위 유형으로 '고금리대출 갈아타기 권유'를 규정하여 금지*

* 대출모집인을 통한 대환대출은 금리부담을 낮추는 경우(고금리→저금리)만 허용

- (수수료 설명의무) 금융회사 홈페이지 등에 모집수수료를 공개하고, 대출모집인은 대출권유시 '모집수수료를 확인 방법(상품설명서 등) 안내

* 향후, 대출모집인이 직접 금융소비자에게 모집 수수료율을 설명하도록 의무화

③ [관리책임] 금융회사 등의 대출모집인 관리 책임 강화

- (모집과정 확인) 금융회사가 소비자에게 대출모집인의 대출 권유 과정*을 확인·점검하여, 대출모집인 관리 책임 강화

* 대출모집인의 성명 및 소속, 접촉경로, 고금리 대출 권유 여부 등 확인

- (계약서류 교부) 금융회사가 대출시 소비자에게 금리 등 중요사항을 확인하고, 최종 확정된 대출계약서류 제공을 의무화

- (이력관리 강화) 대출모집인 등록해지사유, 규정위반 등을 관리·공개*하여, 불완전판매 및 금융소비자 개인정보유출 등 위험 예방

* '대출모집인 조회시스템'에 등록하여 소비자에게 공개

(2) 감독 강화 및 자율개선 유도

① 금융회사의 모범규준 준수 유도

- 대출모집인 운영관련 테마점검 등 집중 감독을 실시하고, 금융회사 '경영실태평가(경영관리의 적정성 항목)에 반영

② 금융회사 자체 영업망 활용 등 자율개선

- 은행 등 자체 영업망을 활용할 수 있는 금융회사들을 중심으로 대출모집인을 금융회사로 흡수하거나 자체 판매채널 전환 등 방안 마련

③ 금융소비자 홍보 및 단속 강화

- 대출검색사이트* 및 신고센터**를 홍보하고, 불법행위 합동 단속 강화

* 서민금융길라잡이(www.hopenet.or.kr)의 '내게맞는 대출', 서민금융진흥원맞춤대출(www.koreaeasyloan.com), 여신협회 대출직거래장터(www.directloan.or.kr) 등

** 금감원 콜센터(1332) 또는 불법금융신고센터(www.fss.or.kr)

(3) 법적근거 마련

- 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 등에 대출모집인 규제를 반영하고, 특히, 과징금·과태료 등 행정 제재 수단 도입

< 대출모집인 제도 관련 주요 제재수단(「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」(정부안) >

① (등록규제) 금융상품대리·중개업 미등록자 및 미등록자에게 대리·중개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

② (영업행위규제) 금융상품 6대 판매원칙 및 '대리·중개업자' 금지행위·고지의무 위반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(3천만원~1억원이하) 등 부과

* 적합성·적정성원칙, 설명의무, 불공정대출금지, 부당권유행위금지, 광고규제

③ (관리책임강화) 대출모집인 의무 위반에 대한 ①금융회사 손해배상책임, ②금융회사·모집법인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(이익의 50% 이내)·과태료(1억원 이하) 부과

Ⅲ. 대부업 광고 규제 강화

1 현황 및 문제점

- **(규제 현황)** 대부광고에 대해 다양한 **내용·형식상의 규제***가 운영 중이며, 특히 **방송광고**에 대해서는 **시간대 규제**** 적용

* **(내용)** 이자율 등 제비용, 과도한 차입의 위험성을 알리는 경고문구 등 표기 등
(형식) 상호, 내용상 표기사항의 글자크기, 최소 노출 시간 등

** **(평일)** 오전 7시~9시, 오후 1시~10시, **(휴일)** 오전 7시~오후10시 (15.7월~)

- **(문제점)** 다양한 **내용·형식상 규제**(및 시간대 규제)에도 불구하고, 방송광고의 **과도한 노출** 및 **내용의 불건전성**에 대한 우려가 지속

2 규제 강화 방안

1 **(행정규제)** 방송광고 총량 자율감축 및 추가 조치 실시

- **(자율감축)** '17년 하반기 대부업 방송광고 총량을 상반기 대비 30% 자율 감축토록 행정 지도('17.7월~)

- **(내용 규제)** ①시청자 숙고를 유도하는 추가정보 표기, ②쉬운 대출을 유도하는 불건전 문구 금지 등 추가 규제 도입

- ① 연체·채무불이행시 불이익(추심 등), 신용등급 하락가능성 등 명시
- ② 누구든 쉽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구 등(누구나 300만원 등)

- **(노출 제한)** 상시적인 “**방송광고 총량 관리제***” 실시 검토

* (예시) ① 업체별 연간 송출횟수, 방송광고비 제한, ② 주요시간대(10시~11시) 집중적 광고 제한 및 연속광고 등 금지 등

2 **(법률 개정)** 국회 차원에서 추진중인 「대부업법」 개정 논의를 통해 대부업 방송광고 금지 등 근본적인 광고규제 강화방안 강구

※ 논의 과정에서 대부업 방송광고 금지의 필요성과 효과, 여타 금융권역과의 형평성 등 관련 쟁점을 면밀히 검토

< 첨부 > '빛 권한하는 관행 개선'을 위한 대출모집인 및 대부업 광고 규제강화 방안

참고

대출모집인 및 대부업 광고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

【 사례 1 】

- ▶ A 저축은행에서 12%대의 금리로 2,500만원 신용대출을 이용중인 자영업자 김모씨는 2,000만원의 추가 대출을 알아보던 중 B 저축은행의 대출모집인 000 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됨.
- ▶ 김모씨가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서류를 보냈더니 10% 초반대의 금리로는 추가 대출이 어렵다면서, B 저축은행의 다른 대출상품은 금리가 18% 정도 되지만 5,000만원의 대출을 6개월만 이용하면 B 저축은행의 우수 고객 등급을 받게되어, 나중에는 12% 수준의 금리로 대출이 가능할 수 있다고 안내받음.
- ▶ 급전이 필요했던 김모씨는 A 저축은행 신용대출을 해약하고, B 저축은행에서 총 5,000만원 대출을 받았으나, 6개월이 지난 후에도 대출이 저금리로 전환되지는 않았으며, 고금리 대출로 인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.

【 사례 2 】

- ▶ 주부 이모씨는 TV를 시청하던 중, C 대부업체의 광고에 등장하는 '신규 고객 최대 30일 무이자'라는 문구를 보게 되었음. 당장의 생활 자금이 부족하여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, 이번달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한도를 초과하여 며칠간 빠듯한 생활을 해야했음.
- ▶ 이모씨는 신용카드사에서 안내받은 현금서비스(단기카드대출)는 이자가 비싸서 사용하려는 생각을 거두었지만, C 대부업체에 전화를 하여, '무이자'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 200만원 대출을 신청하였음.
- ▶ 다음달 생활비로 30일내에 대출금 200만원을 갚았지만, 신용등급 하락으로 신용카드사로부터 '신용카드 한도 축소' 통보를 받고, 몇 달 후 은행의 대출상품을 알아보던 중 신용등급 문제로 최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당황하게 됨.